

마케팅센터운영위원회규정

(폐지: 2021.06.01.)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학홍보의 활성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마케팅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대학교 마케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본 대학교 광고홍보 시안 제작에 관한 사항
3. 기타 본 대학교의 대내·외 홍보에 관한 사항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전략기획본부장, 마케팅센터장의 당연직 위원과 전략기획본부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하며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5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 업무의 보다 원활한 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토록하며, 그 임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정한다.

제6조(회의록) ① 위원회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폐지한다.